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공론화위원회 운영평가 및  
노후소득 확보방안**

2024. 5. 28 (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연 금 연 구 회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공론화위원회 운영평가 및  
노후소득 확보방안**

2024. 5. 28 (화)

**연금연구회**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좌장을 맡게 된 이근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함께 뜻을 모아 금일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 경제적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은 우리의 연금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정과 연대, 그리고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중요한 기둥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오늘과 내일이 달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옳은 속도와 방향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는 연금개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모여 고작 몇 년의 고갈 시기를 늦추는 형식적 개혁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빚더미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려와 함께 하루 빨리 연금개혁의 시작종이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미 있고 성과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연구회 고문

이근면

#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사회: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주제 발표

- 전영준 한양대 교수
  - 국민연금 개편안별 미적립부채 규모 추정과 정책적 합의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연금연구회의 연금개혁 원칙과 개혁 방향
  - ^재정추계 결과 등에 기초한 정책제안의 논리적 근거들
- 박명호 홍익대 교수
  -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진실
- 이강구 KDI 연구위원
  - 국민연금 신규연금 분리 운영방안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 초노령사회 노후소득 확보방안 - 배벌사가 대안이다 -
-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
  -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제도로의 개혁을 위한 보충연금으로서의 주택연금제도 방안

## 토론

- 좌장: 이근면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인사혁신처장,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 토론자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재정추계 전문가)
  -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 박동석 아이뉴스24 사장
  - 주정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청년대표 (김은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4학년)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I

# 국민연금 개편안별 미적립부채 규모 추계 결과

전 영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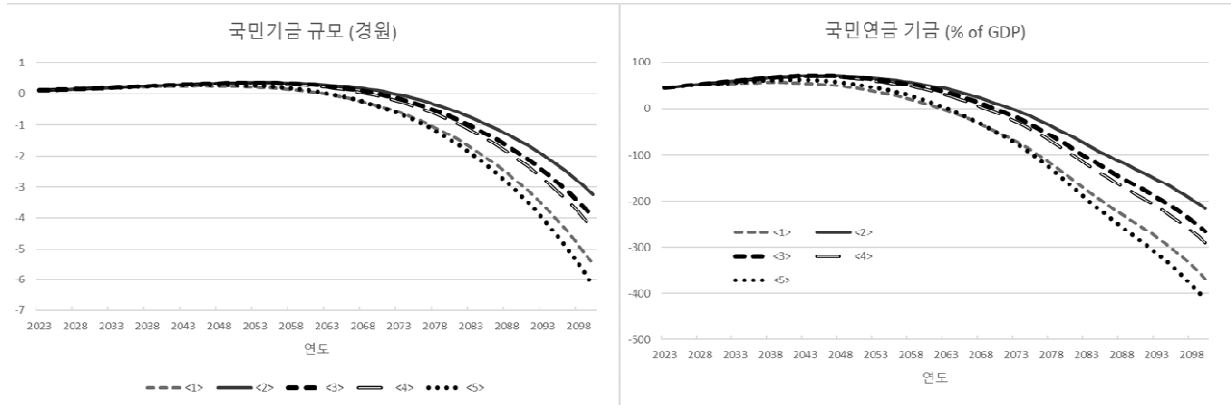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 국민연금 개편안별 미적립부채 규모 추계 결과

전영준

한양대학교

- 국민연금 제도 개편 시나리오별 암묵적 부채 및 세대별 순조세부담 추계
  - <1>: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9% (현행제도)
  - <2>: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12%
  - <3>: 소득대체율 44%, 연금보험료율 13%
  - <4>: 소득대체율 45%, 연금보험료율 13%
  - <5>: 소득대체율 50%, 연금보험료율 13%
- 암묵적 부채
  - = 각 시점의 연금가입자의 잔여생애동안 지급할 국민연금급여의 현재가치
  -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
  - 각 시점의 연금기금 규모
- 세대별 순조세부담
  - 현행제도 유지시와 비교 (생애소득의 %로 환산)
  - 순조세
    - = 생애기간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
    - 생애기간 수급할 국민연금급여의 현재가치
  - 현재가치는 출생시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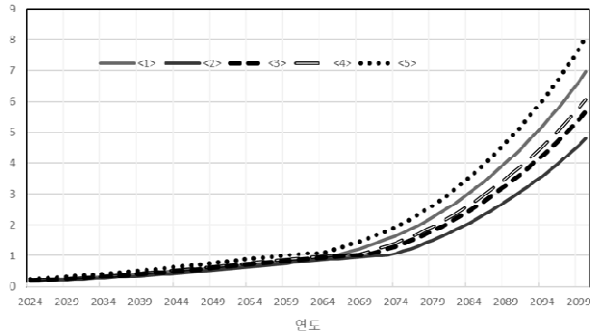


<1>: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9%; <2>: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12%; <3>: 소득대체율 44%, 연금보험료율 13%;  
 <4> 소득대체율 45%, 연금보험료율 13%; <5>: 소득대체율 50%, 연금보험료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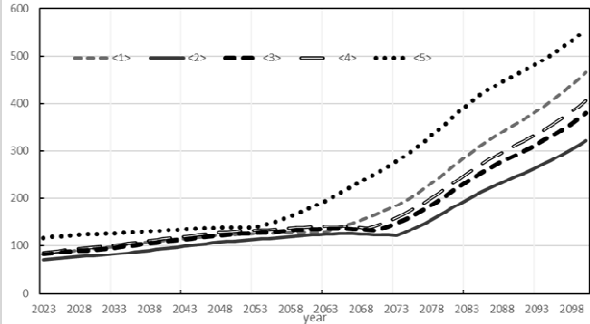
## 암묵적 부채

소득대체율		40%	40%	44%	45%	50%
보험료율		9%	12%	13%	13%	13%
암묵적 부채 (조원)	2023	1,825	1,576	1,846	1,934	2,641
	2050	6,332	5,632	6,366	6,652	7,770
	2093	49,324	34,013	40,250	43,086	79,539
암묵적 부채 (GDP 대비 비율,%)	2023	80.8	69.8	81.8	85.7	115.9
	2050	122.5	109.0	123.2	128.7	138.8
	2093	383.9	264.7	313.3	335.4	483.6

암묵적 부채 (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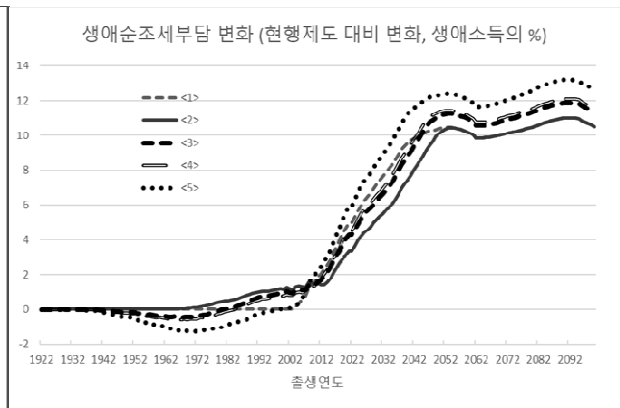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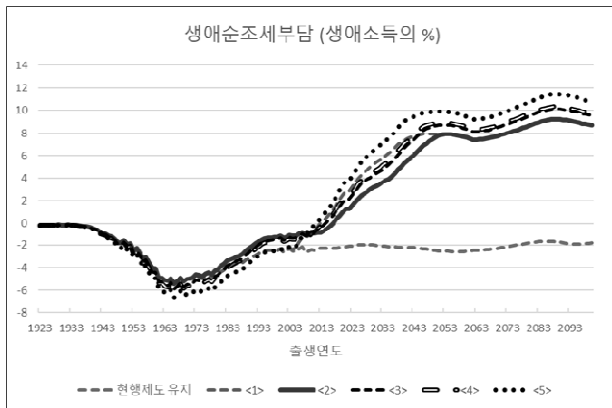


암묵적 부채 (% of GDP)



<1>: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9%; <2>: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12%; <3>: 소득대체율 44%, 연금보험료율 13%;  
 <4>: 소득대체율 45%, 연금보험료율 13%; <5>: 소득대체율 50%, 연금보험료율 13%

- 연금기금 고갈후 부과방식 전환하는 상황을 상정(<1>-<5>)
- 기금고갈 후 부과방식 전환하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현행제도 하에서와 비교하여 최고 생애소득의 10% 이상 증가(<1>)
- 연금보험료 12%로 인상시 (<2>),
  - (부과방식과 비교하여) 현재세대 일부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하지만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감소
- 연금보험료 13%로 상향조정하고,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시 (<3>, <4>, <5>),
  - 현재세대의 일부의 순조세부담 감소
  -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
  - 임금대체율 44(45)% 상향조정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현행제도하에서와 비교하여 생애소득의 11-12% 상승
  -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면 순조세부담이 생애소득의 12-13% 상승



<1>: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9%; <2>: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12%; <3>: 소득대체율 44%, 연금보험료율 13%;  
 <4> 소득대체율 45%, 연금보험료율 13%; <5>: 소득대체율 50%, 연금보험료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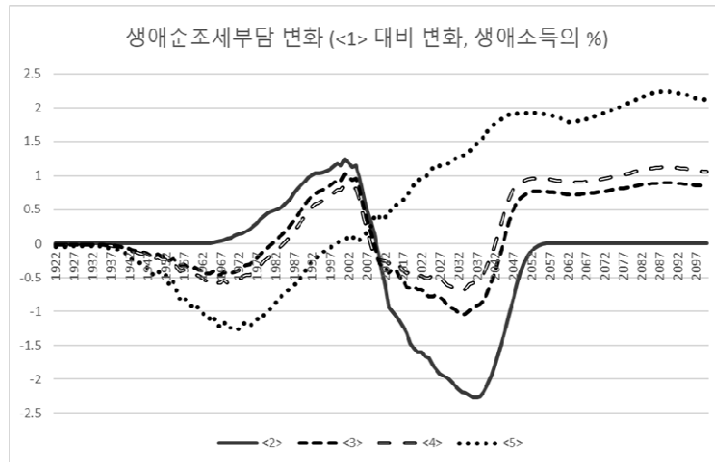
현행제도 유지는 정책 조정 없이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상황 상정

<1>~<5>는 기금 고갈시 부과방식 전환되는 상황 상정

좌측 그림은 생애순조세부담의 절대수준을 우측 그림은 현행제도 대비 생애순조세부담 변화를 나타냄.

• 생애순조세부담을 <1>과 비교하면,

- 연금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현재세대 중 일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미래세대 일부의 부담이 감소
-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함.
-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면 미래세대 전체의 순조세부담이 증가하며 증가폭이 생애소득의 2%에 이름.



<1>: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9%; <2>: 소득대체율 40%, 연금보험료율 12%; <3>: 소득대체율 44%, 연금보험료율 13%;  
 <4> 소득대체율 45%, 연금보험료율 13%; <5>: 소득대체율 50%, 연금보험료율 13%

<1> 대비 생애순조세부담 변화를 나타냄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II

**연금연구회의**  
**연금개혁 원칙과 개혁 방향**  
**- 재정추계 결과 등에 기초한 정책제안의 논리적 근거들 -**

윤 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연금연구회의 연금개혁 원칙과 개혁 방향

## - 재정추계 결과 등에 기초한 정책제안의 논리적 근거들 -

2024.05. 28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RT.1  
공론화위원회 활동 평가

PART.2  
연금개혁의 주요 원칙들

PART.3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PART.4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 제시 - Way forward



# 1. 공론화위원회 활동 평가



## 1.1 공론화위원회 논의안에 대한 재정 평가 기초자료 (1)

### 대안 별 수지균형 보험료율,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 비교

구분		현재(9-40)	1만(13-50)	2만(12-40)
기금고갈 시기		2055년	2061년	2062년
2093년 누적적자	총액	2경 1,656조원	2경 2,660조원	1경 7,058조원
	증감액	-	+1,004조원	-4,598조원
소득대체율에 따른 수지균형보험료율		19.8%	24.8%	19.8%
기금소진 후 최대 필요보험료율(%)		35.0%(2078년)	43.2%(2078년)	35.1%(2078년)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	2005년형	14.1%	14.8%	13.1%
	2015년형	20.2%	22.2%	18.8%
	2025년형	26.6%	29.6%	24.5%
	2035년형	32.1%	36.1%	29.3%
GDP 대비 총지출(%)		최대 9.5%(2083년) 8.8%(2093년)	최대 11.8%(2083년) 11.0%(2093년)	최대 9.6%(2083년) 8.9%(2093년)

출처: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 뉴스1에서 재인용

## 1.2 공론화위원회 논의안에 대한 재정 평가 기초자료 (2)

보험료·소득대체를 조정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구분	수지 적자	기금 소진	필요보험료율		수지균형 보험료율 (보험료율과 차이)	현행 대비 누적수지 적자규모 (경상가 기준)
			최고 ('78년)	'93년		
9-40 (현행)	2041년	2055년	35.0%	29.7%	19.8% (-10.8%p)	-
13-43	2048년	2064년 (+9년)	37.5%	31.9%	21.3% (-8.3%)	-4,318조원
13-44	2047년	2064년 (+9년)	38.8%	32.7%	21.8% (-8.8%p)	-3,738조원
13-45	2047년	2063년 (+8년)	39.1%	33.4%	22.3% (-9.3%p)	-2,766조원

출처: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

## 1.3 공론화위원회 논의안에 대한 재정 평가 기초자료 (3)

< 현행 및 대안별 재정전망 >

구분	구분		기금소진 시점	필요보험료율 <sup>1)</sup> ('78년 기준)	현행대비 누적수지 적자 규모 <sup>2)</sup> (경상가, ~'93)	GDP 대비 총지출 ('83, 최고)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현행	9%	40%	2055년	35%	-	9.5%
1안	13%	50%	2061년 (+6년)	43.2% (+8.2%p)	+1,004조원	11.8% (+2.3%p)
	64세 연장	13%	2059년 (+4년)	45% (+10%p)	+5,676조원	13.5% (+4%p)
2안	12%	40%	2062년 (+7년)	35.1% (+0.1%p)	-4,598조원	9.6% (+0.1%p)
	64세 연장	12%	2060년 (+5년)	36.6% (+1.6%p)	-833조원	10.9% (+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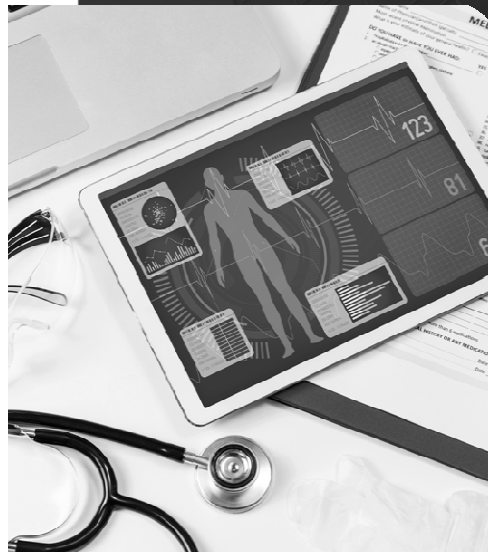
- 1) 필요보험료율: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  
 2) 누적수지는 기금소진 시점부터 추계기간 말('93년)까지 연도별 수지를 누적하여 계산  
 \* 의무가입연령은 현 59세에서 2025년 이후 2년마다 1세씩 상향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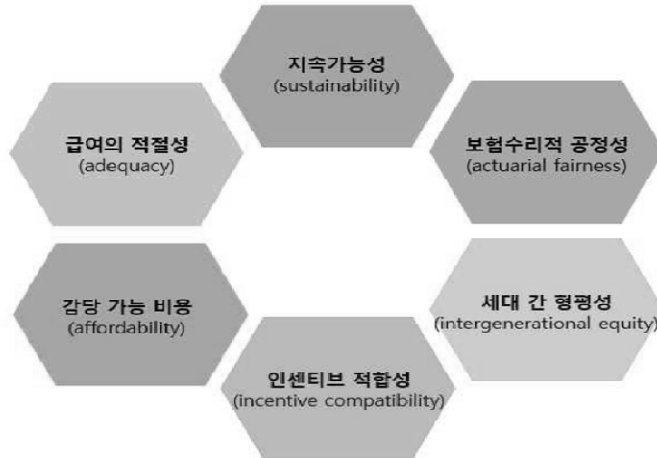
출처: 국회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료. 아시아 경제에서 재인용

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안을,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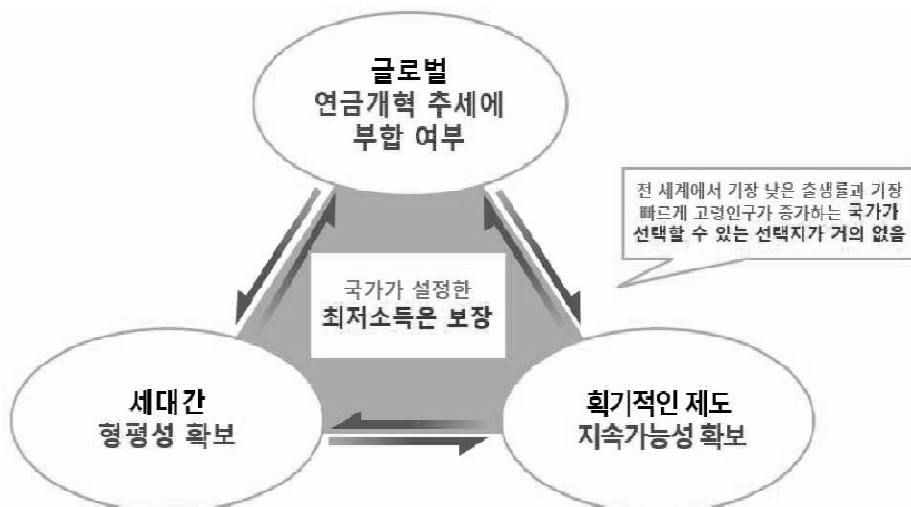
-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의 핵심 내용
  -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10년 내에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할 지라도
  - 재정안정 달성 불가능 (훨씬 미흡)
-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조합안을 채택할 경우
  - 보험료율을 수지균형보험료인 21.8%까지 인상해야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짐.
  - 제도 개편 이후에 매년 8.8% 포인트에 달하는 보험료를 적게 걷음에 따라, 매년 그만큼 부채 발생.
- 2093년까지 누적적자를 3,738조원(경상가)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 시민대표단이 합의한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상향 조정할 경우
  - 누적적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조정될 예정인지라, 의무납입연령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한 조치임.

## 2. \_\_\_\_\_ 연금개혁의 주요 원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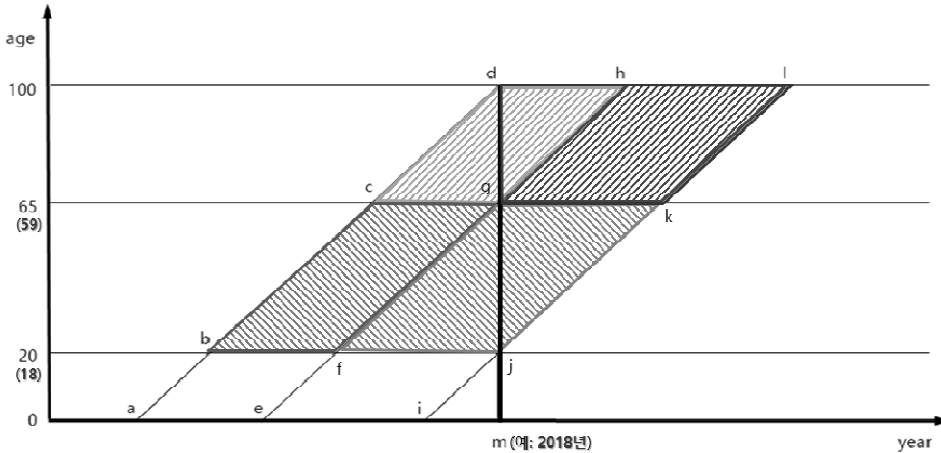
출처: Armand Fouejieu, et al(2021).. 윤석명 외, 국회 입법조사처 (2022)에서 재인용



출처: 윤석명 (2021)

● 렉시스 도형(Lexis Diagram)

- 포퓰리즘 정책들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수단
- 재정추계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제도에 내재된 재정 불안정 요인이 노출됨 (한국 70년 vs 일본 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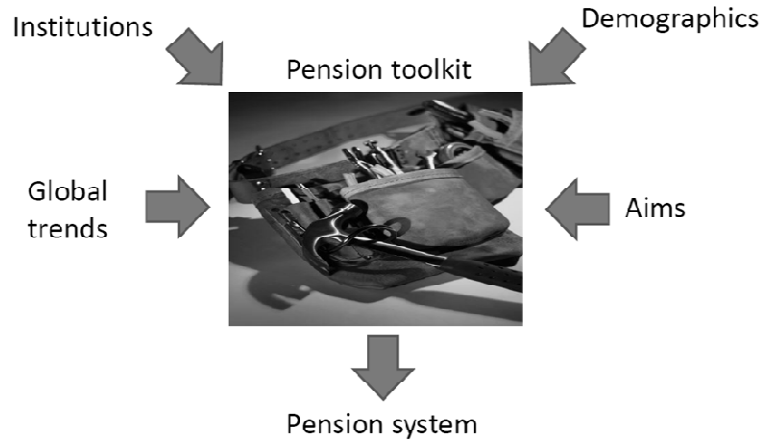
2.4 기금소진 시점 위주의 재정안정 평가 관행이 장기 재정상황을 호도

- '소득대체율 50%-보험료15%안'과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5%안' 출처: 5차 재정계산위원회 자료  
 • 기금소진 시점 차이가 5년에 불과함  
 • 소득대체율을 20% 포인트나 더 지급하되, 보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해도 5년만 차이남.  
 • 기금소진 시점: 2065년(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과 2070년(소득대체율 30%-보험료 15%)

	최대적립 기금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부과방식비용률			
				2080년	2093년	소진시점	
현재도 유지안 (보험료 9%, 대체율 40%)	2040년 (1,755조원)	2041년	2055년 (△ 47조원)	34.9%	29.7%	26.1% ( '55)	
소득보장안 I (보험료율 15%, 대체율50%)	2049년 (3,048조원)	2050년	2065년 (△ 13조원)	43.2%	37.1%	38.5% ( '65)	
강한 재정 안정화안 (보험료율 15%, 대체율 30%)	① 소득 비례형	2048년 (2,684조원)	2049년	2069년 (△268조원)	27.6%	23.1%	27.3% ( '69)
	② A값유지	2049년 (2,709조원)	2050년	2070년 (△231조원)	26.7%	22.4%	26.5% ( '70)

## 2.5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금 시스템 구축

- 연금개혁의 국제 추이 반영
  - 인구구조 변화 고려
- 기존 연금제도의 경로 의존성
- 적절한 연금 정책목표 설정
-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한국적인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출처: 한국과 스웨덴 복지부 장관이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 스웨덴 전문가 발표 자료 (2013).

## 3.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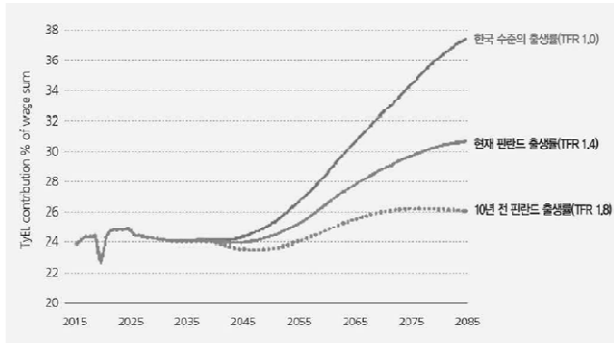


### 3.1 외국의 연금 전문가들과 최신 연금개혁 동향 공유

#### Ismo Risku, Finnish Centre for Pensions (FCP)의 기획조정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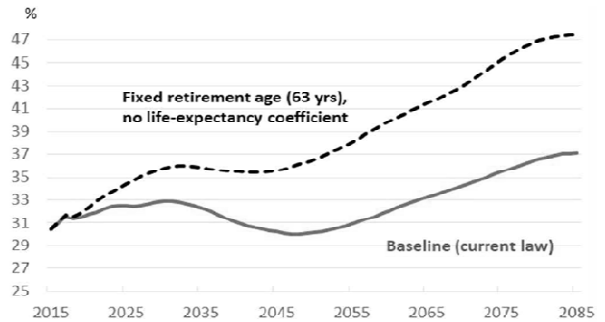
-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상이한 출산율 가정 하에서의 재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제도 (Peer Review) 도입

(핀란드) 상이한 출산율 가정 하에서의 필요 보험료율 변화 추이



출처: Mikko Kautto, 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1

자동안정장치 부재, 수급연령 63세로 고정할 경우 예상 보험료 수준



출처: 윤석명 외 (2022)

### 3.2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최신 제도 현황과 비교

#### 한중일 연금 전문가 회의

- 일본 연금분야 공무원 발언
- 일본(18.3%)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한국(9%)이
- 어떻게 일본(소득대체율 약 33%)보다 훨씬 많은 연금 소득대체율(42%)을 보장할 수 있는가?

#### 日本の年金制度の特徴 (3) 最近の動向

##### • 最近の改正

##### • 2004年改正

##### (1) 保険料固定方式の導入

- 従来は給付水準を決定し、それに見合う保険料(率)を設定。
- 2004年以降、国民年金は毎年280円、厚生年金は毎年0.354%引き上げ、国民年金は2017年4月に16,900円(2004年度価格)、厚生年金は2017年9月に(18.3%)で固定。

##### (2) マクロ経済スライドの導入

- 保険料を固定したことで、収入を増加させる方法の1つが失われた。
- その中で、給付と負担のバランスを確保することが必要。
- 物価や賃金の上昇に連動した給付水準の上昇について、経済社会の状況をもとに一歩抑制する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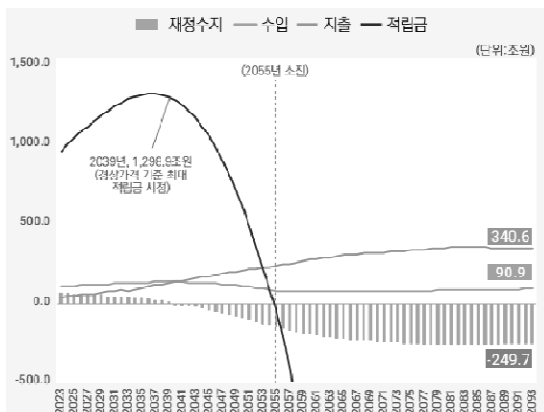
##### (3) 有限均衡方式の導入

- 約5年分の給付をまかなうだけの額があった年金積立金を、(100%)用かぎ、約1年分の給付をまかなう水準まで取り崩す。
  - ただし、5年に1回行われる財政検証のたびにその後の(100%)で計算するため、実際に今か(100%)後に約1年分の給付しか残ら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
- ※ 財政検証では、パラメータによっては積立金が枯渇するケースも想定。

### 3.3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 보험료 인상 최소화, 자동안정장치 통해 재정안정 달성

-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
  -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
  - 핀란드 식의 기대여명계수 도입과 이로 인해 줄어든 실질 연금소득은 의무납입연령 연장 통해 보충

Long-term Projection of NPS (Baseline): 2023~2093



Source: NABO

Changes in Case of 2%pt Increase in Replacement Rate (from 40 to 42%) of the N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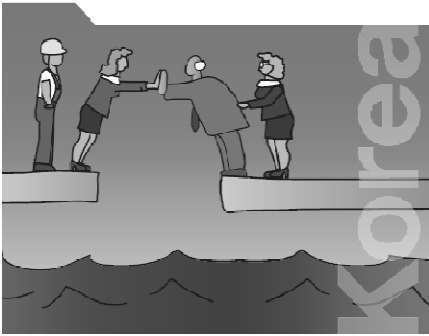


## 4.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 - Way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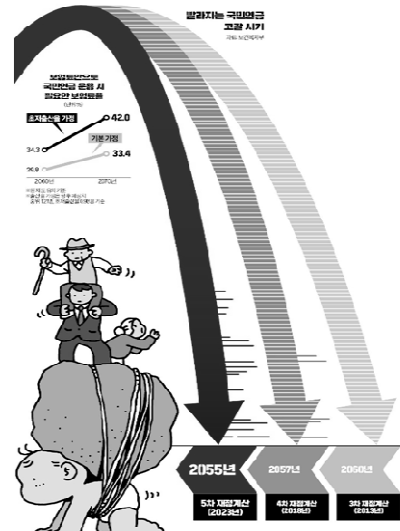


## 4.1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의 연금 정치

### 칼날 위의 균형과 같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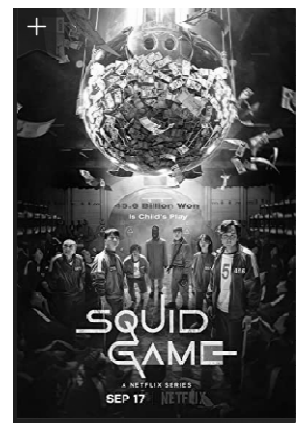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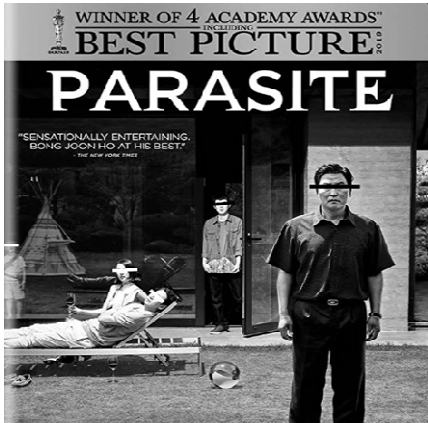
OECD



## 4.2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한국 노인빈곤의 핵심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음.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연금개혁은 별개 문제임.  
 노인빈곤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해결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Greed and class discrimination threat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althy family & the destitute clan in darkly modern fairytale.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처럼 40%를 유지 하고, 보험료만 인상함

- 연금개혁을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는 것임
  -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 19.8%의 보험료(수지균형 보험료)를 걸어야 하기 때문임.
- 국회 특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 보험료 13% 조합'은 개악안임.
  - 13%가 아닌 21.8%의 보험료를 걸어야만 소득대체율 44%에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 넘기지 않게 됨.
  - 미래세대 부담 덜기 위한 개혁 논의인데, 부담을 더 많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악이라고 단언할 수 있음..
-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
  -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는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여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함.
  -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면,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추어 기존 수급자의
  -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삭감됨에 따라, 연금개혁에 따른 세대간 고통 분담이 가능하게 됨.
  - 보험료를 최소한 12% 이상으로 인상해 놓아야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III

#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진실

박 명 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제4차 연금연구회 세미나

## 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진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 발표순서

0. 국민연금의 진실: 국민연금만으로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1. 국가재정의 진실: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든든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가?  
- 국가재정에 대한 과도한 미신을 가진 주장들과 이에 대한 평가

## 0. 국민연금의 진실

### ◆ 국민연금만으로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래의 성격에 맞게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금 유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연금의 콘티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보장이 되십니까?'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 30년간 연금이 고갈된다는 말로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의 노후보장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주세요.

공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수많은 의견들을 모두 꼼꼼히 봐주시고, 연금재정고갈이라는 불안 조성하는 방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방송으로 국민들이 연금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주세요. 우리는 모두 국민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시민대표단 소감)

## 0. 국민연금의 진실

### ◆ 국민연금의 현실을 고려시 대답은 NO!!!

- 충분하지 않는 가입기간, 낮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낮은 소득계층의 지속 유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만으로는 결코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없음

가입기간		28년			40년		
소득대체율		40%	50%	증가	40%	50%	증가
소득 (만원)	저(150)	63	79	16	90	113	23
	평균(300)	84	105	21	120	150	30
	고(590)	125	156	31	178	223	45

### ◆ 대안(global standard)

-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다층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필요

##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 1

◆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든든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가?

- 소득대체율 인상을 옹호하는 그룹의 주장: "공적연금 지출 총량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렇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한국 공적연금 지출의 GDP 대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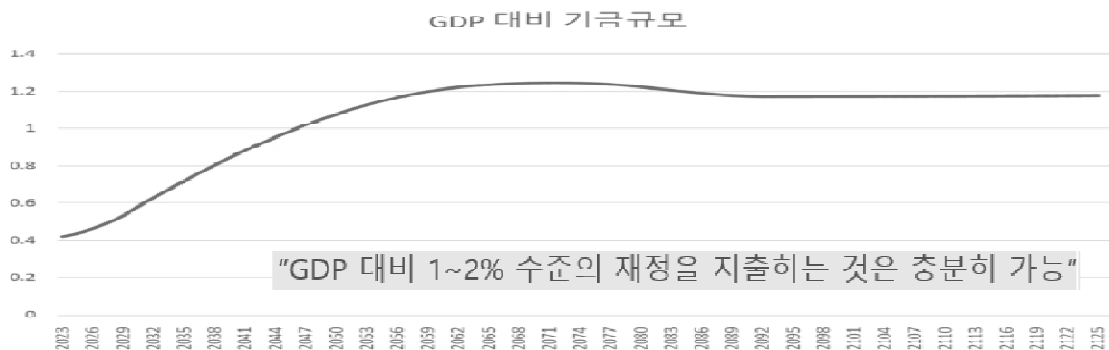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3
한국	국민연금	1.3	2.7	4.4	6.3	7.7	8.8	9.4	9.2
	기초연금	0.8	1.4	2	2.5	2.8	3.1	3.2	-
	직역연금	1.2	1.4	1.4	1.5	1.6	-	-	-
한국 공적연금 평균		3.3	5.5	7.8	10.3	12.1	-	-	-
OECD 31		8.9	9.5	10.0	10.2	10.3	-	-	-
EU 27		8.5	8.8	10.2	12.3	13.9	-	-	-

자료: 한국 국민연금은 제5차 재정계산자료이며 나머지는 정부자료임 OECD와 EU는 OECD(2023)

##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 2

- '3-1-1.5 개혁안' 주장하는 그룹의 주장: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국가재정을 매년 GDP의 1% 투입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을 매년 1.5%p 높인다면 향후 100년간 연기금 규모가 GDP의 약 1.2배 수준 유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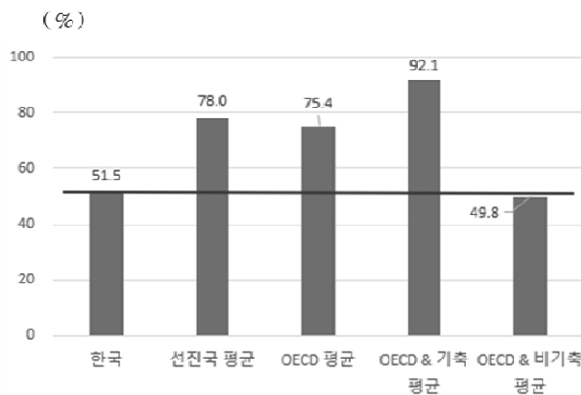
##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 국가재정에 대한 미신적 주장을 제기하는 그룹은 국가재정의 장기적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신에 가까운 정도로 국가재정에 과도하게 의지하려는 경향 노출
  - 2023년말 기준 1035.8조원이나 쌓인 국민연금 기금이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한 구조'와 저출생·고령화로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재정위험에 직면함을 인정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국민연금에 한정된 난제가 아니라 국가도 지속가능하지 않는 나라빚을 가질 수 있다는 경고를 애써 무시
    - ✓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은 국가재정도 지속가능성을 염려해야 할 정도의 재정위험에 직면할 것임을 계속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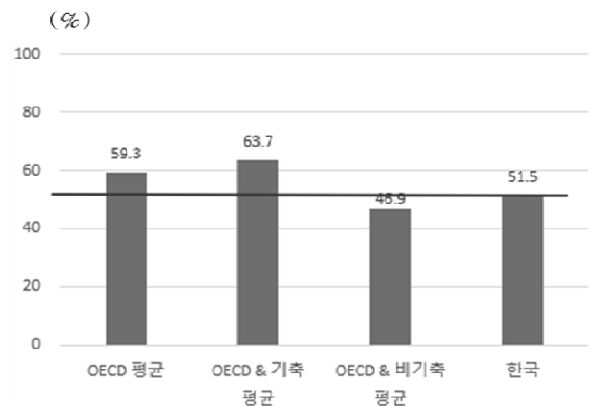
##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 미신에 가까운 국가재정에의 의지는 현재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에 기인
  - 전체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비교적 양호할 뿐, 유사 국가 대비 오히려 소폭 높은 상황

<일반정부 부채비율(D2)>



< 2021년 기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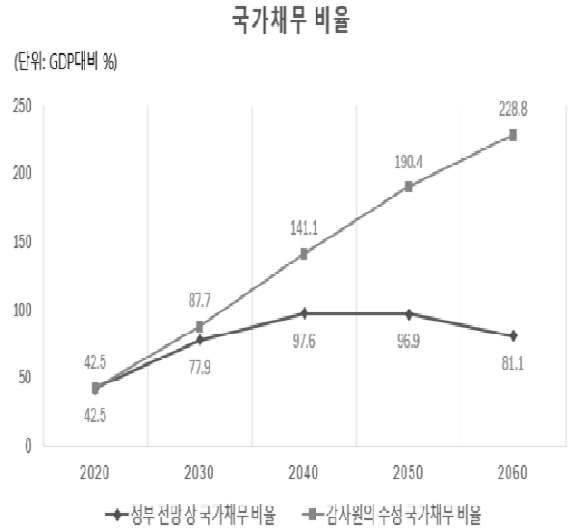


<고령인구 비율(16.5% 내외) 기준 비교>

##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 2020년 정부 장기재정 전망

- ▶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통제하는 강력한 지출준칙의 미도입시,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2060년 228.8% 초과 예상
- ▶ 주의: 건강보험('60년 GDP 대비 6.5% 적자) 과 노인장기('60년 GDP 대비 2.0% 적자)의 적자 미반영, 북(北) 도발 지정학적 위험 전무, 어떤 경제위기도 미발생, 탄소중립전환에 따른 재정수요 미반영 ⇒ “매우 낙관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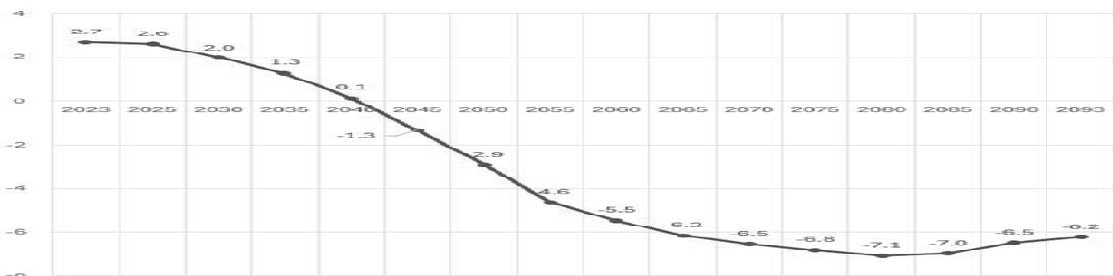


##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 기금 고갈 후 매년 GDP의 5~7% 수준의 재정적자를 국가부담 시 나라빚은 폭발적으로 증가 타당
- ▶ 기금 고갈 후 누적적자(GDP 대비 %): '60년 26.5%, '70년 87.9, '80년 156.2%, '90년 224.7%

국민연금 장기 재정수지 전망 결과: 제5차 재정계산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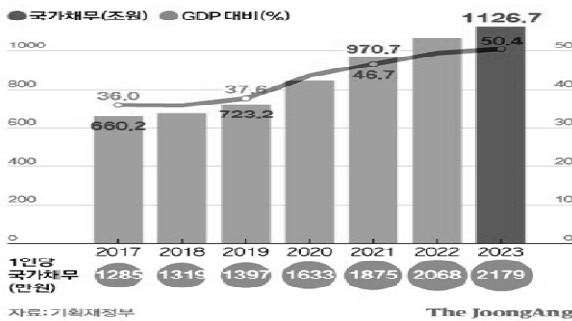
주: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됨에 따라 2054년말 잔존 기금을 감안하는 2055년 순재정수지 적자비율은 0.8% 수준으로 파악됨  
출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2023.10.

##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 2023년말 국가채무 1,126.7조원 vs 국민연금 기금 1,035.8조원

- 매년 GDP의 1% 정도의 나랏빚을 더 내서 국민연금 재정에 투입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매년 GDP의 1% 정도의 국고투입이 가능하다면, 왜 국고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에서 수익률이 낮은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노인시설에 투자하자고 하나?

#### 1100조원 돌파한 나랏빚



#### 2023년 말 기준

#### 국민연금기금 운용 성과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 원**

2023년 운용수익금

**127조 원**

운용수익률 **13.59%**

누적 운용수익금 (1900~2023)

**578조 원**

누적 연평균 수익률

**5.92%**

##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 대다수

- \* 사각지대: 소득중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험료를 못내는 납부예외자 ('23년 기준 약 294만명), 장기체납자(약 77만명), 소득없는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
- ⇒ 이런 상황에서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깨지 않고 GDP의 1~2%의 국고를 투입하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 야기 가능

#### < 국민연금 적용현황(2023년 12월 기준) >

공적연금 가입자					공적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2,238만명					특수지역 연금가입자
지역가입자 671만명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 800만명	
사업장 가입자 1,481만명	소득신고자 377만명	장기체납자 77만명	납부예외자 294만명		
		임의 가입자 33만명	임의계 속 가입자 53만명		

\*     : 국민연금 사각지대

## 1. 국가재정의 진실: 미신적 주장에 대한 평가

- ◆ 다만, 공적연금의 판매자이며 운영자인 국가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 국민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측면에서도 보험료와 급여의 균형을 회복하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무 존재
  - 국고 투입 측면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에 각종 정책적 기능(재분배, 크레딧, 보험료 경감 등)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 OECD(2022) 권고: 재분배요소의 재원은 사회적 선호에 따라 기여금이나 일반조세로 조달할 수 있기에, 국민연금의 재정 균형을 위해 그 재원의 일부는 일반재정으로 충당
    - ✓ 정책적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캐나다는 공적연금(CPP)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반면, 정책적 기능을 부여한 독일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고로 충당

## 2. 국고투입에 대한 일방적 주장에 대한 평가

- ◆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측면
  -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됨으로써, 가입자에게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강한 권리 의식을 심어주고, 연금급여를 받을 법적, 도덕적, 정치적 권리를 가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임
  - 만일 일반재정의 투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연금급여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일종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면, 기여자들의 권리 의식이 약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증가하게 됨
    - ⇒ 그 결과, 연금급여 수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쉽게 변동될 수 있음
    - ⇒ 특히 기금 운용 측면에서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익성이 낮은 영역에 투입될 수 있음

## 2. 국고투입에 대한 일방적 주장에 대한 평가

### ◆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지원 시 바람직한 방안

- ✓ 부가가치세율의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사회보장세로 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회보험 및 공적 부조 프로그램에 투입
  - 국민연금 재정 지원범위: 순수 보험기능 외에 국가가 부여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 한도로 설정
- ✓ 왜 부가가치세인가?
  - 소득세 및 법인세보다 조세왜곡이 덜 심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
  - 재분배측면에서는 소득세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세대간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수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수확충 여력 측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보다 훨씬 우수
  - 세입 안정성 측면에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보다 우수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IV

# 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 운영방안

이 강 구  
(K D I)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 국민연금 신규연금 분리 운영방안

May 28, 2024

이강구

World's Leading Think Tank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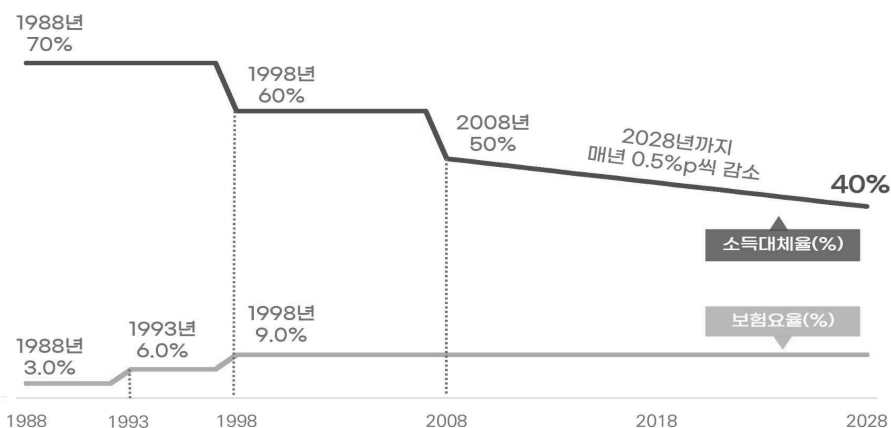
## CONTENTS

1.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2. '기대수익비1' 신연금제도 도입방안
3. 신연금제도 운용방안 제안

# 1 |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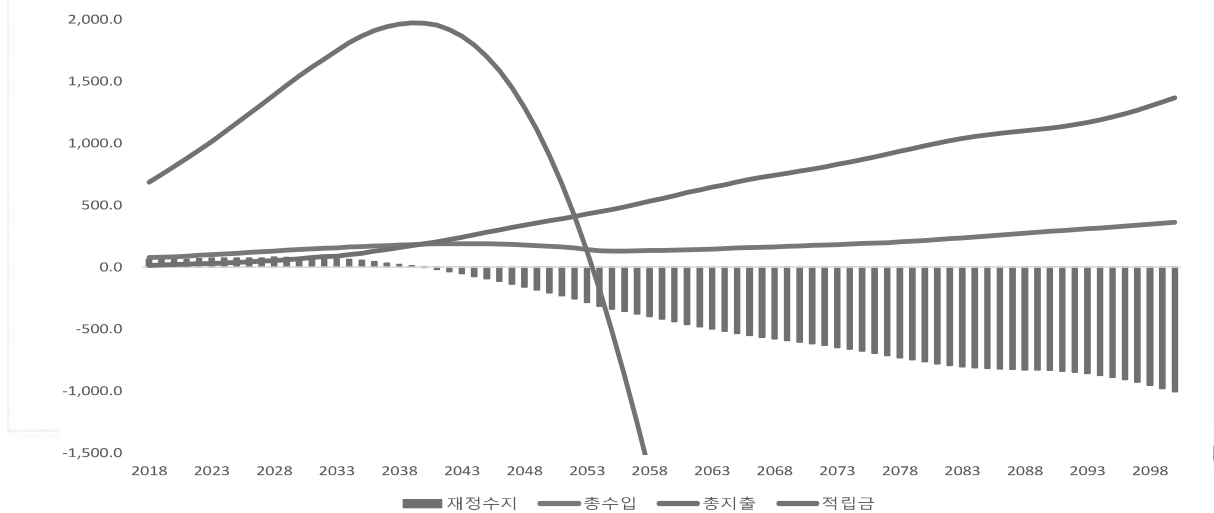
## 1-1.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 ◆ 1988년 1월 국민연금 도입 이후 1998년 1차 국민연금 재정개혁 실시
  - 보험료율 3%와 기존 소득대체율 70%로 시작
  -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65세까지(33년까지) 상향
  - 2003년 1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2047년에 기금 소진
  - 2007년 2차 재정개혁에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



## 1-2.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 ◆ 본 연구의 재정추계 결과 2054년 적립기금 소진이 전망됨.
  - 2023년 적립기금은 1,015.8조원(GDP의 44.8%)
  - 2039년 최대 규모인 1,972조원에 도달
  - 연금이 지속된다면, 2080년 GDP 대비 8.1%의 재정적자 총당 필요
    - 일반재정 지원이 없다면 보험료율을 34.9%로 올려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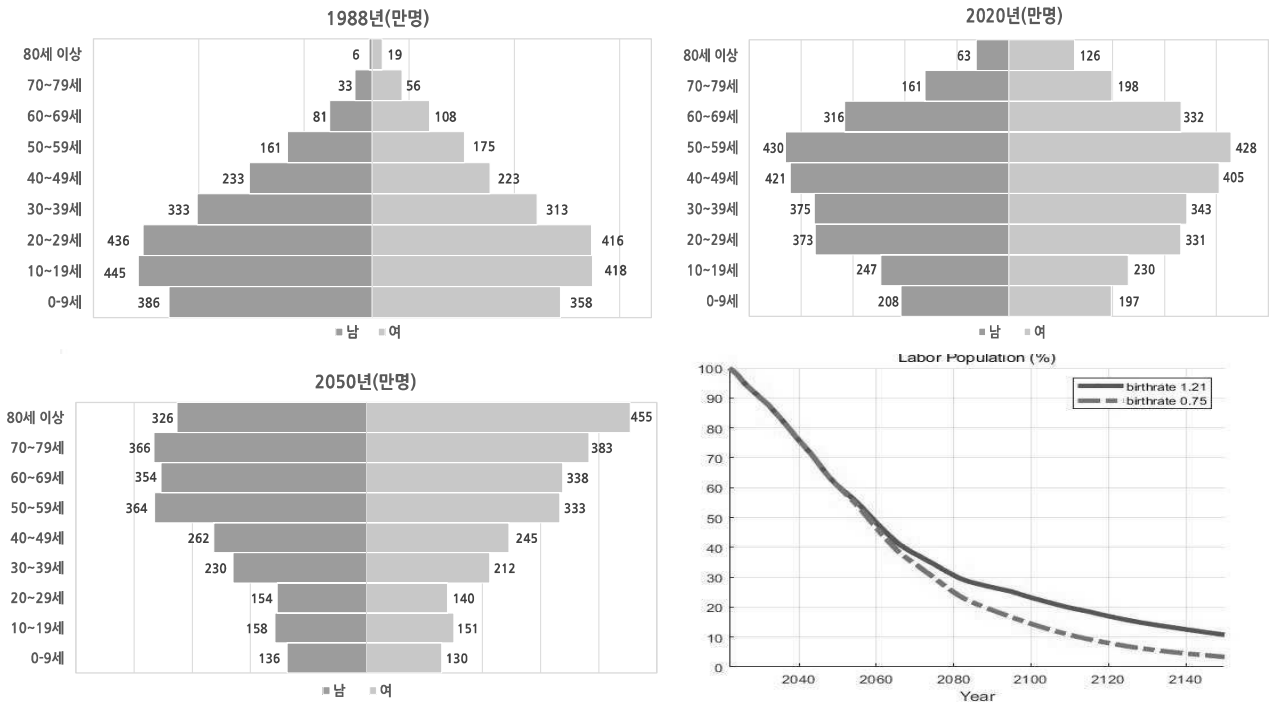


## 1-3. 현행 연금제도

- ◆ 본 연구는 구조개혁 없이 모수조정만으로는 기금소진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 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임.
  -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개혁방안은 대표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같은 모수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음.
- ◆ 연금제도 유형 구분
  - 재정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부과식과 적립식으로 구분
    - 부과식은 근로세대에서 부과되는 기여금 수입으로 은퇴자들의 연금지출을 지급하는 방식
    - 적립식은 납입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령연금 급여를 총당하는 방식
  - 급여산정방식 기준으로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구분
    - DB형은 근로이력(근로소득이력, 가입기간 등)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
    - DC형은 납입한 보험료(+이자/수익, 은퇴 시 기대여명 등)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
  - 우리나라는 현재 부분적립+DB형: 적립기금 소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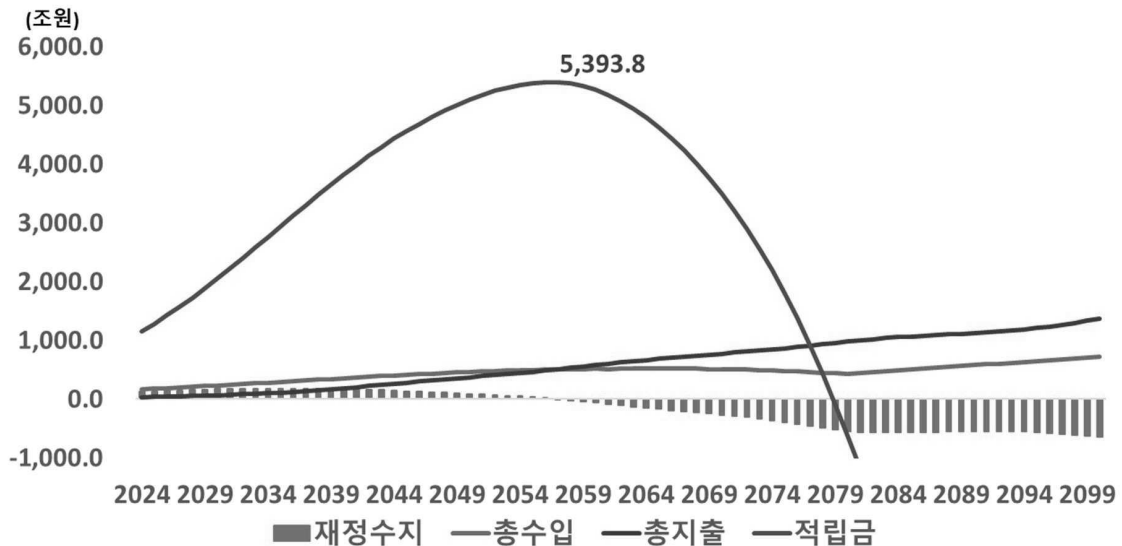
# 1-4.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상에 있음.



# 1-5. 보험료율 18%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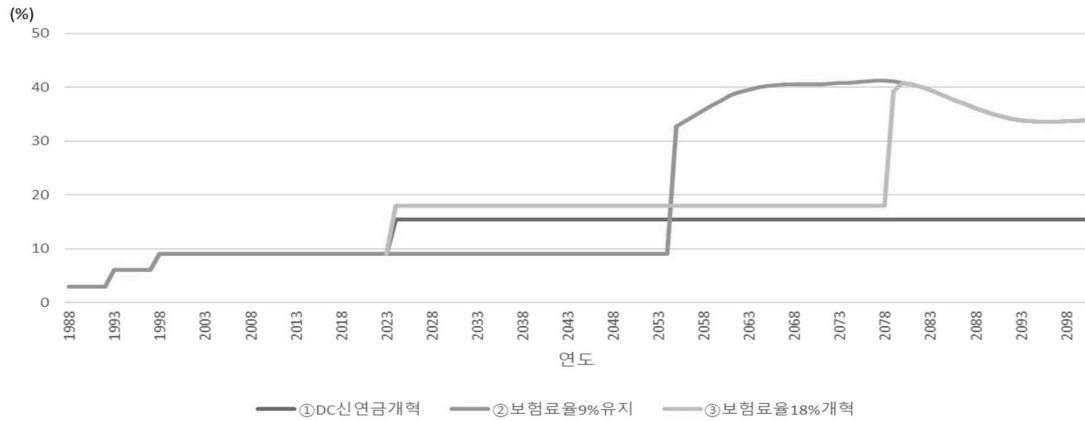
◆ 현행에서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여도 기금소진이 발생하며, (보험료+수익) 대비 86% 뿐이 받을 수 없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1-6. 적립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율 변화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이후 약속된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과방식비용률’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9%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2050년대 중반 이후 30~40% 상승
- 18% 보험료율의 경우 2080년경부터 40~30%대로 상승해야 함.



KDI

World's Leading Think Tank

2

## ‘기대수익비1’ 신연금제도 도입방안

KDI

## 2-1. '기대수익비'?

- ◆ 기대수익비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 수익의 합 대비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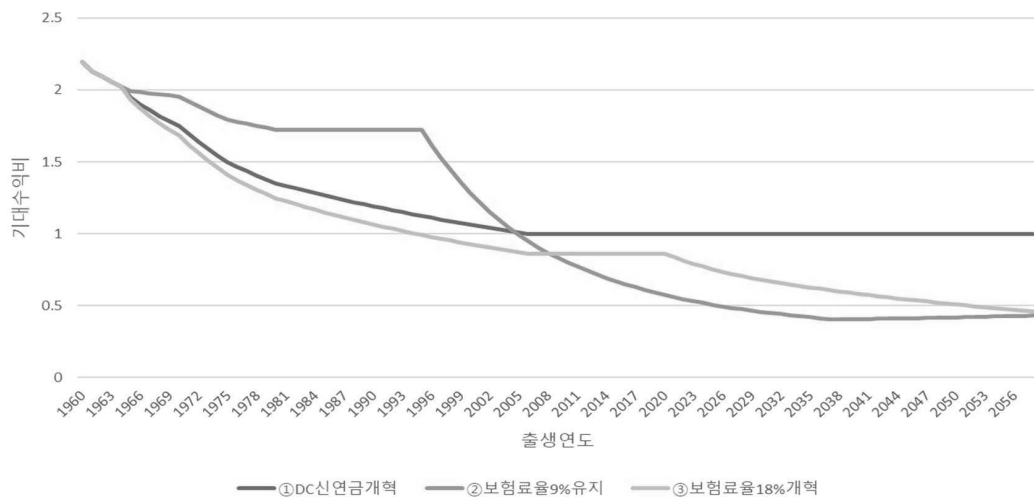
$$\text{기대수익비} = \frac{\text{연금급여 총액}}{\text{보험료} + \text{기금운용수익}}$$

- 기대수익비 = 1 : 연금급여 = 보험료+운용수익
- 기대수익비 > 1 : 연금급여 > 보험료+운용수익
- 기대수익비 < 1 : 연금급여 < 보험료+운용수익

KDI

## 2-2. 출생연도별 기대수익비 비교

- ◆ 출생연도에 따라 적립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상승 부분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들은 기대수익비가 1을 초과하나 이후 세대들은 기대수익비가 1을 하회함.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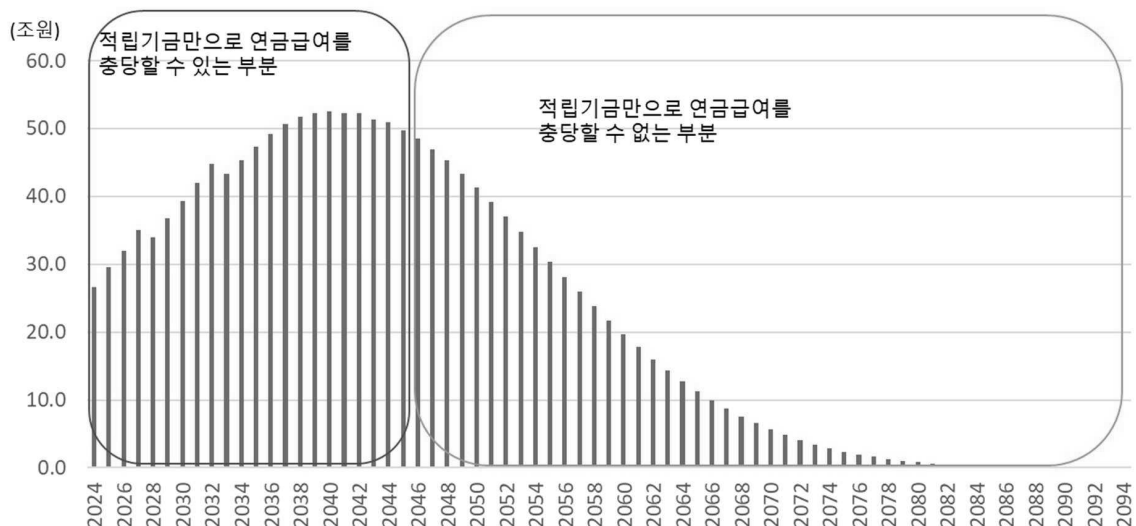
## 2-3. 기대수익비1의 신연금 도입방안

- ◆ 연금개혁시점을 기준으로 개혁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대수익비 1의 완전적립식 신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개혁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개혁 이전에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산식에 따라 연금급여를 지급
-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기금고갈 걱정이 없는 것이 장점이며, 더 이상 기존세대가 더 받아가는 것에 대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됨.
  -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에서 부담한다면, 신연금에서는 보험료를 15.5%까지만 인상해도 현재 약속된 40%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KDI

## 2-4. 구연금의 재정부족분

- ◆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2024년 기준 609조원(GDP의 26.9%)
-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부담의 명목가치가 최소화 ⇒ 구연금 기금 소진 전 재정투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 개혁 시점이 5년 지체되면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져서 개혁이 더 어려워짐.
  - 2029년 기준 869조원(GDP의 38.4%)으로 +260조원 증가 전망



## 2-5. '기대수익비1' 신연금제도 도입방안

- ◆ 현행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연금'의 보험료율을 15.5% 이상으로 올려야 함.
- 공론화 과정에서 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56.0%  
②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42.6%
- '신연금'에서의 소득대체율 상승은 주로 보험료율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여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 급여 수준이 변하지 않는 DB형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



World's Leading Think T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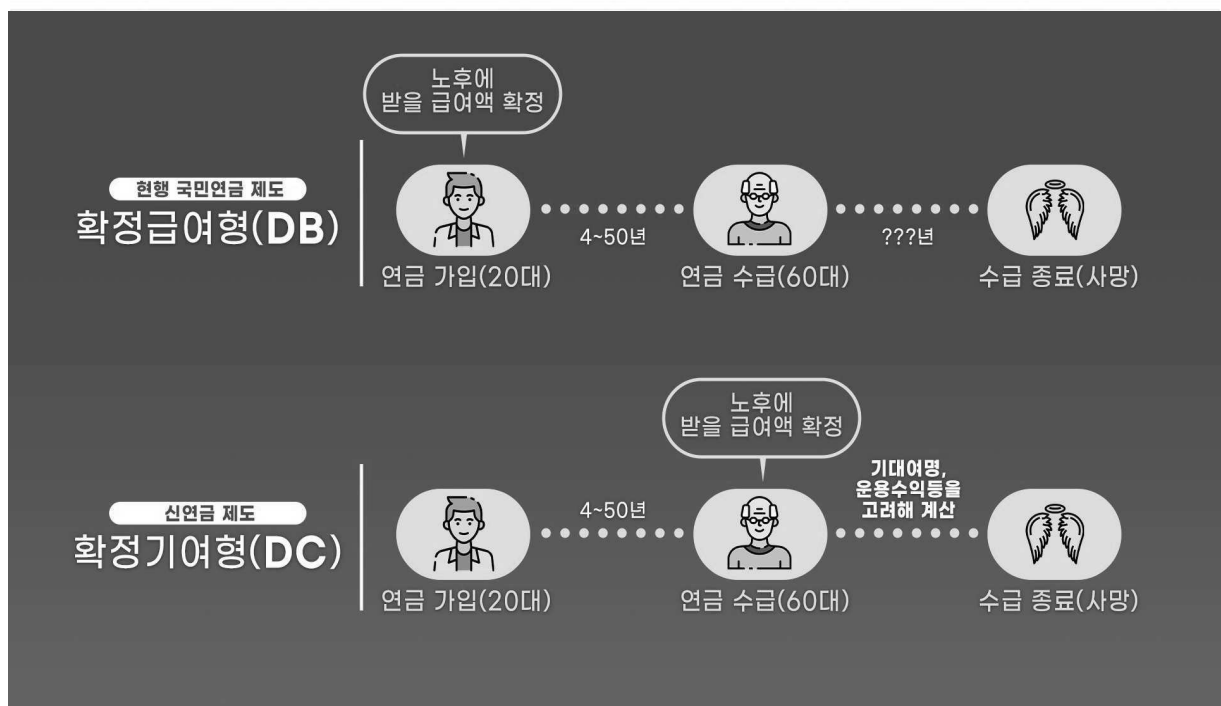
### 3 | 신연금제도 운용방안 제안



## 3-1. 신연금제도 운용방안 제안

- ◆ 구조개혁 없이는 영구적으로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란 불가능
  - 현행 확정급여(DB)형 연금제도에서 보험료율을 고정한 채로 기대수익비 1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중립(neutral) 기금 수익률, 기대여명, 경제성장률(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이 불변해야 하며
  - 이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
    - 최용욱(2015)에 따르면 사망률 전망은 지속적으로 과대추정되고 있음.
  - 출생연도별로 보험료율을 상이하게 적용해야 함.(세대별로 기대여명 및 경제전망이 상이함) ⇒ 불가능
  - 무엇보다도 적립기금 고갈에 따라 연금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신뢰가 훼손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을 것

## 3-2. DB형 vs DC형



### 3-3. DC형 신연금제도의 불확실성 보완방안

- ◆ 코호트 은퇴시점에 실질 연금 급여 흐름을 확정하면, 현행과 같이 기금수익률 하락, 물가상승률 상승, 사망률 하락으로 재정이 불안정 가능
- (해결방안1) 코호트 적립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인 연금급여 흐름을 재계산함.
  - 경제 및 인구 충격으로 인하여 실질 연금이 매우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기초 연금을 재정비할 필요
- (해결방안2) 실제 기금수익률보다 더 낮은 가상수익률을 제시하고, 기금수익률의 초과분은 완충 계좌에 적립하여 충격에 대비
  - 완충 계좌가 소진되면 급여를 줄이고, 너무 많이 적립되면 급여를 올리는 방식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탑재

KDI

### 3-4. 신연금제도의 공적연금 역할

- ◆ 공적연금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적립방식 중 세대별 계좌제(CCDC; 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 연금 제도를 제안
- 각 연령군(코호트) 구성원은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이 계좌에 적립 및 투자됨.
- 개인계좌제와 다른 점은, 사망자의 가상계좌 적립액이 동일 코호트 생존자의 계좌로 이전됨.
- 기대여명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기대여명 평균보다 늦게 사망하는 사람에게 소득 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생존자의 평균 연금 급여를 개인계좌제보다 더 높일 수 있음.
- ◆ 세대별 계좌제 DC 연금 제도는 현행 연금제도와 같은 소득재분배 가능
- (현행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비슷하게) 각 코호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개인 급여와 소속 그룹 평균 급여에 가중치를 부여

KDI

KDI KDI

World's Leading Think Tank **KDI**<sup>1</sup>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V

# 초노령사회 노후소득 확보방안 “배벌사가 대안이다”

주 명 룡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 초노령사회 노후소득 확보방안 “배벌사가 대안이다”



주 명 룡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 Gerontocracy, Korea  
노년공화국, 대한민국
- Beveridge Report  
노년의 4대 고충

## ◆ 정부의 노년 경제활동정책의 시작

2000년 7월 노령화 사회 진입

- 노인일자리 시작
- 인구 및 미래사회 TF설치(현 저출산위원회)
- 역모기지제도(주택연금)도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정
- 경노연금->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 사는 노령사회

3

## ◆ 사회적 인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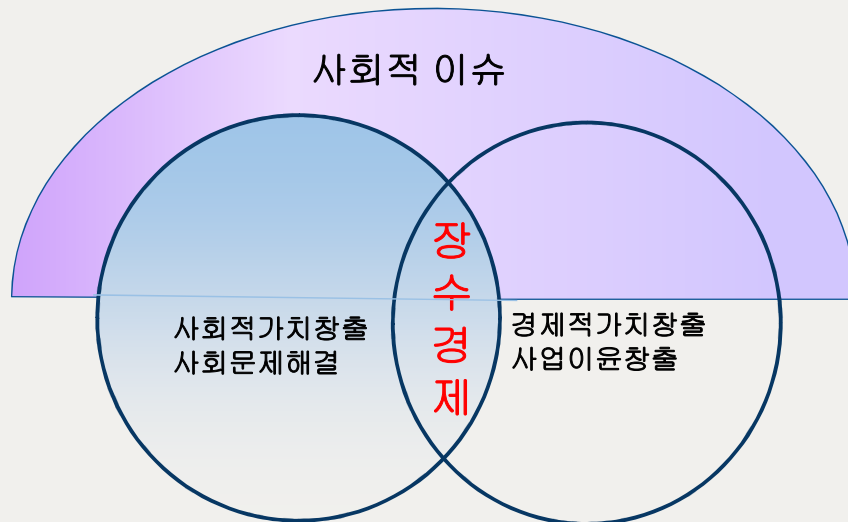
- 연령차별 폐지  
“나이보다 능력”, “경험, 경륜은 유효기간이 없다”
- 연령포용사회(Age Inclusive Society)구축  
UN, AARP 등 국제사회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 사는 노령사회

5

## ◆ 기업과 노년경제활동을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평점이 1점 오를 경우 매출액은 5~9% 상승한다”.  
Michael Luca, Havard Business School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 사는 노령사회

## ■ 장노년층 경제수명 늘리기 방안

정부	기업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한 정년정책</li> </ul> </li> <li>- 노동시장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협력 강화</li> </ul> </li> <li>- 의료 및 건강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li> <li>- 재교육 및 역량강화</li> <li>- 연령의 다양성 및 포용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인식개선 (배벌사)</li> <li>- 커뮤니티 지원</li> <li>금융지원 및 교육</li> </ul>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 사는 노령사회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IV

**‘넌 만큼 받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보충제도로서의 주택연금 개선방안**

**박 순 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보충제도로서의 주택연금 개선방안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 1. 국민연금제도의 목표 및 문제점

### 1. 국민연금제도의 목표

생애소득의 안정 ↔ 퇴직후 생활의 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 2. 문제

○ 노후소득의 부족 ← 연금제도의 미성숙 : 제도지속성의 위협 병존 ← 저출산·고령화

#### 1) 근본적 문제: 제도 도입당시의 설계의 문제

① 적립방식 문제를 알고 있었음

② 고속의 저출산·고령화: 고갈시점 예상 당초 2070년대 → 2055년 당겨짐

◆ 2028년후 기본연금급여방식은  $1.2(A + B)(1+0.05n)$ ; 초기부터  $(A + B)(1+0.05n)$  구조 유지.

(1)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은 구조적으로 불가피 :

현행 급여산정식에서 고령화 문제 없고, 소득대체율 40%유지 시

보험료율 9% 및 15% → 수급기간 20년 고소득층도 수익비 1.8배 1.1배

보험료율 20%일 때만 평균 소득층 수익비 1.0 : 기금재정의 수지균형

(표 1)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익배율

	수급기간 10년			수급기간 15년			수급기간 20년		
	9	15	20	9	15	20	9	15	20
보험료율(%)	9	15	20	9	15	20	9	15	20
고소득층 (평균소득의 1.5배)	0.9	0.6	0.4	1.4	0.8	0.6	1.8	1.1	0.8
평균소득층	1.1	0.7	0.5	1.7	1.1	0.8	2.2	1.4	*1.0
저소득층 (평균소득의 0.5배)	1.7	1.0	0.8	2.6	1.5	1.1	3.4	2.0	1.5

(2) 노후소득 보장성

- 현실적으로 고령화문제 없을 때, 보험료율과 수급기간과 관계없이 평균 소득대체율은 가입연도 40년에서만 현행 평균소득대체율 40% 가능함. 평균 35%.

(표 2) 국민연금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고소득층	평균소득층(A=B)	저소득층
연금제도가입기간 40년	33%	* 40%	60%
연금제도가입기간 35년	29%	35%	53%
연금제도가입기간 30년	25%	30%	45%

(3) 소득재분배 효과 - 세대내 강력한 재분배 장치

- ① (표1)에서 보험료율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수익비는 상위소득층보다 매우 큼
- ② 세대 간 재분배효과 - 후세대 '낸 것도 못받 음' - 제도에의 저항과 붕괴
  - 낸 것만큼 받기 위한 기간: 보험료율 9%에서는 평균소득자는 9년, 고소득층 11년
  - 가입기간 40년에 보험료율을 20%에서도 20년 수급하면 낸 것 다 받음

(표 3) 국민연금수익비가 1이 되는 연금수급 기간(m 년)

	저소득층(평균의 0.5배소득수준)	평균 소득자	고소득층(평균의 1.5배 소득수준)
보험료율 9%, 가입기간 40년	6년	*9년	10.9년
보험료율 15%, 가입기간 40년	10년	15년	20년
보험료율 20%, 가입기간 40년	13.3년	*20년	24년

2) 기금고갈의 문제는 2000년대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모수조정에 그침

- ◎ 올 4월 총선이후 국회 연금특위국민공론위원회와 국회에서 두안 발표
  - 여당 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3 /44 %로 인상 (고갈 2055 -> 2062년)
  - 야당 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인상 (고갈 2063년)
  - 고령화 문제 배제 할 때, 평균소득자의 수익배율은 수급기간 20년에서 현행 2.2에 비해, 45%시 1.73, 44% 1.69, 43% 1.65 이어서 1를 크게 넘어 기금고갈 불가피
- ◎ 고령화 없고, 기금고갈 이후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인구규모가 같고 일인당 소득이 같으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 어린이 및 그 후 세대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은 소득의 40%이어야 함(2070년 한국노인부양비 100.6).
  - 더욱이 고령화로 수급자규모 > 기여자규모이고 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고 소득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세대의 수급기간을 줄이거나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을 더욱 증가시켜야 함(예, 수급기간30년이면 현행식에선 수익비는 3.3).

● 미래세대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각종 소득세를 내고 나면 소득의 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생활을 해야 하고, 지난 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대비 못하여, 결국 공적연금제도의 거부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국가가 재정보증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세대의 조세부담능력이 부족하고, 은행에서 돈을 찍어 국가부채를 증대시켜도 인플레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담은 결국 그 다음 후세대에 전가되어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임.

## II. 주택연금의 실태와 문제점

### 1. 보충연금제도로서의 주택연금의 강화 필요성

1)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시기에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인의 생활고가 매우 큼.

- 평균 노령연금급여액이 2022년 12월말 기준 586,112원, 유족연금 318,101원에 불과.

- 연령별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와 실제 가계소득을 비교한 결과 5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실질가계소득이 부족한 편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족금액이 큰 편임.

- 2019년 70대와 80대는 생활비에 비해 실질가계소득 부족액이 113만원, 129만원임

2)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절실하고 규모가 크며 증대될 전망

- 연금제도의 미성숙시기에 한국 노인들은 주택에의 투자가 일반화되어, 한국의 가계자산 중 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64.4%로 미국 28.5%, 일본 37.0%보다 크게 높음.

○ 주택연금 이용자가 2007년 515건에서 2023년 약 11만 건으로 크게 증대하였으나, 2023년 노인가구(549만) 중 자가가구(430만)는 78.3%이어서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큼.

- 단독주택 노인가구 194만 가구 중 자가는 164만 가구이고,

아파트 거주 노인가구 266만 가구 중 216만가구가 자가임

-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 자가 단독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규모는 141.6만 가구임.

3) 주택연금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민간개인연금에 추가되는 제4의 그러나 많은 주택보유자들에게는 제2의 주요 노인소득보장 수단이 될 것임.

- 주택연금에서 공공의 역할은 대상을 시장금융에서 배제되는 가입자를 포함하고 급여수준을 높여 국민복지를 증대시키는 것임.

2. 실태

- 2005년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전략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가 선정되어 2007년 주택연금 출시.

① 주택연금의 가입 방식

- 주택연금방식은 대출방식과 매각방식이 있고, 한국에서는 양 방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대출방식에 의존하고 있음.

• 대출방식에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종신연금 형태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시중 은행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민간 역모기지가 존재

② 국내외 주택연금제도의 쟁점 비교

(표 4) 국내외 주택연금제도의 비교

	한국	외국
방식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방식에 집중	대부분 국가에서 대출 및 매각 방식이 공존
대상	- 12억원이하의 주택만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대상은 주택의 전부	- 주택가격의 제한 없음 - 생명보험 등도 대상 - 주택의 부분 가입도 가능
사망 시 주택의 기대잔액	- 감정가를 통한 매각 후 잔액 - 잔액의 감정가액이 연금급여누적액보다 적어도 상환의무 없음	- 부분가입 시 매각시의 가격의 협의 가능. - 계약이외의 주택소유에 대해선 집값 인상의 이득 가능
상환방식	이자 및 보증료가 복리로 누적해서 상환됨	매월 이자의 납부가 가능해서 단리로 재산가치 감소함

3. 문제점

- 현재는 소비자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주택의 유동화라는 근본 취지는 유지되고 있음.

- 운영방식은 금융기관의 수익 및 안전성의 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선택을 크게 위축시키고 노후생활 안정화의 국민복지증진의 중요 기능이 실현되지 못함.

① 복리방식으로 이자와 보증료의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저당된 보유주택의 가치 삭감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잠재적 수요자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반면 저가주택의 보유층은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서 소득 및 자산 재분배가 있음.
- 집값이 싸고 이자와 보증료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쌀수록 오래 살 수 있으면 과도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지분기점 아래에게만 유리한 구조임.

② 가입대상 주택의 제약

- 12억원 이하의 아파트 가격 이하로 가입을 제한한 것이 큰 문제임.
- 또한 주택의 부분 가입을 제한으로 12억 이상 주택보유자의 가입의지를 꺾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가 미성숙단계에서 투자한 주택의 생활소득으로의 전환치 못하고 있음.

③ 현재 및 미래 주택가격의 저평가

- 주택 감정가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고, 장기적으로 오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시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

④ 주택상속과 관련된 가족간 의견대립, 상품 불만족 등도 주택연금의 가입을 막고 있음.

Ⅲ.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안

1. 제도개혁의 방향

- 4중 체계의 연금제도로 확대 필요.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 다룸.

1) 연금제도의 실태

(표 5) 국내 각종 연금제도의 실태요약

유형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직역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대상 및 민간연금			
규모	국민연금 476만명(2023)	공무원연금 63만명(2022)	주택연금 11만명(2023)	하위 638만명 (23.10 현재)
평균수급액(2022)	36.9만원	203만원		22.1만원

2) 제도개혁의 목적

- ① 현재 및 미래세대의 국민복지증진
- ② 국가재정 파탄의 방지
- ③ 노후생활의 안정

3) 개혁의 방향

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방향

- (미래세대) 기금고갈 시점 및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미래세대(2055년 30세인 2025년생 이후의 세대 혹은 20세인 2035년생 이후의 세대)

▶ '낸 것 만큼 받는 연금'인 소득비례제도의 적용하면 기금고갈의 문제는 없음

▶ 세대 내 재분배를 위해서는 급여산식에 세대 간 중립적 재분배 장치 가능 및 기초연금제도의 강화

나. 현 세대 및 제도이행기 세대(2055년 혹은 그 후까지 현행 급여산식서 보험료 납부 세대)

첫째, 현행 방식의 급여산식을 적용

둘째, 특정시기(예, 10년후)부터는 국민연금에서는 낸 것만큼 받고, 주택연금 등 다른 보충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보장

예, (유자산가) 국민연금 + 주택연금 + 기타 자산연금 + 부모부양특별소득세 공제 등  
(무자산가)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특별 노후생활지원(현금, 서비스 및 일자리 등)  
+ 부모부양특별소득세 공제 등(자식에 투자한 인적자본에서 기여분의 회수)

1. 기여만큼 받는 국민연금제도로의 개편과 노후소득의 안정화 방안

(표 6) 현행급여방식과 소득비례방식의 장단점 비교

	현행 급여방식	소득비례 급여방식
특징	-연기금기여자 ≠ 연금수급자 -과거 독일 및 일본의 방식	-양자 동일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채택
재정수지 균형의 달성	수익비 1 초과하여 균형 불가	항상 수지균형
생애소득 안정효과와 인구구조의 영향	소득대체율과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	인구구조변화의 영향 없음. 합의된 소득대체율이 결정
소득대체율	저출산·고령화시기 보험료율 20%에서도 40% 달성 불가	현 대체율 중심의 차등비례제 가능
소득분배효과	세대내 재분배, 세대간 역진적	분배 중립적이어서 보충연금 필요
사회통합 및 국민복지	사회갈등 초래, 국민복지 감소	갈등해결을 다른 제도로 보완가능

2. 주택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주택연금제도는 노인가구 보유 아파트의 매매 및 임대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표 7) 주택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주택연금 수요증대
제도 내부의 개선	연금방식의 변경	주택 일부 담보의 대출 및 매각허용
	비용부담방식의 유연화	이자 및 보증료의 선 공제 선택의 허용/ 단리 및 복리 선택 허용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의 제한 규정 폐지
	부분 매각방식 도입	주택매매가 어려운 시기 공공(연기금등)의 매입 및 연금 지급
기타방안	대출 조건의 변경	월 지급형식의 민간연금 대출에서는 DTI의 적용 폐지
	가입자후손의 상속세 축소	후손들의 반대축소와 부모부양 고취 - 사망후 가입주택 잔여분의 상속세 축소 - 자녀의 부모 부양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 토 론 문

박 동 석  
(아이뉴스24 사장)

작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누가 봐도 눈속임수에 불과하다. 고작 고갈 시기를 9년 늦추는 것을 어떻게 개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받는 돈을 깎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극심한 눈치보기로 어정쩡하게 올려놓은 안을 개혁이라 할 수 있는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후세대 재산 약탈범죄에 다름아니다. 또 회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개혁안 국회 처리는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정치인들은 연금의 장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다. 뒤편에 숨어서 눈치보는 정부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다. 개혁을 추진하려면 알뜰한 모수 개혁보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세금으로 적자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곧 터지는 사학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끈 프랑스나 그리스 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표피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층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과 한미FTA를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개혁을 늦춘다면 그 후폭풍은 두고 두고 후세대를 괴롭힐 것이다.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 토 론 문

김 은 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토론 패널 참석 제안을 받은 이후, 20대 청년의 대표로서 전해야 할 말을 정리하기 위해 다수 2030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관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다수 청년들이 가진 공통적인 의견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현재 20대는 사망 시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땀질식으로 진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몇 년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납입액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하는 우려, 소문만 무성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연금 개혁에 대한 불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국민연금을 ‘폰지 사기’에 빗대 표현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앞서 언급한 설문에 참여해준 동료 친구들의 의견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고갈 이후 청년 세대가 감당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35%에 육박합니다. 9%에서 13%로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35%에 달하는 보험료율이 강제된다면, 지금의 청년층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는 선배 세대의 노력으로 일군 대한민국에서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제자리걸음인 작금의 상황과 쪼그라들어버린 취업 시장, 그리고 치솟는 집값과 물가를 바라볼 때 청년 세대가 살아내야 할 대한민국은 결코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과 육아를 하나둘 포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대표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의 혜택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 배려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단순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넘어 국민연금이 오래 지탱될 수 있는 방향의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의 연금 개혁안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모수 개혁을 통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같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때마다 새로운 논의를 해야한다면 해당 논의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현실적인 이유로 모수 개혁을 선행하는 상황이라면, 소득 대체율을 낮추더라도 국민연금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의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금 고갈을 염려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는 공방전이 이뤄지는 것을 볼 때,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3. 국민 연금 개혁 과정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3년 7월 실시한 2030 청년 1152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73.3%가 연금 개혁 논의에 청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현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통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청년 세대를 포괄한 미래세대이므로,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연금연구회의 성격과 운영 취지

연금연구회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공적연금을 통한 최적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공부 모임입니다. 공부 모임의 특성 상, 연금연구회는 특정 세대나 정파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들이 합의한 개념과 그에 기반한 수치를 분석하고, 검증된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모형을 세운 후에, 그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추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연구 모임입니다.